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94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 : 홍성국·강선우·김경협

김병욱 · 김성주 · 민병덕

박재호 · 송재호 · 양기대

윤관석 • 이개호 • 이상민

이용빈 · 이용우 · 이원욱

이형석 • 인재근 • 임종성

한준호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, 제대군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·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, 기존의 제대군인은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제대군인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을 위

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제대 군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5 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, 제13 조의2 및 제15조의 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제 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	제25조(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
배제)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	배제) ①
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	
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	
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3
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	
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	
그 형이 확정된 사람	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사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1
	1조, 제11조의2, 제12조,
	제13조, 제13조의2 및 제1
	<u>5</u> 조의 죄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